

<p>6~7(생략)</p> <p>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p> <p>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p> <p>11~13(생략)</p>	<p>9~10(순번 변경, 현행 6~7 와 같음)</p> <p>(삭제)</p> <p>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p> <p>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시(이후 "추심이체"라고 한다.)</p> <p>13~15(11~13 현행과 같음)</p> <p>16 (신설)</p> <p>16.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 6 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p>	<p>- '목' 항목 추가</p>
<p>제 4 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p> <p>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p>제 4 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p> <p>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목 (삭제)</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p>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 ④와 같음)</p>	
<p>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p> <p>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p>2. (생략)</p> <p>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p>2. (현행과 같음)</p> <p>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p> <p>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p> <p>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제 6 조(접근매체의 관리)</p> <p>① 이용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p>제 9 조 공인인증서 사용</p> <p>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 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p>제 7 조(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p> <p>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이용시간</p> <p>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 8 조(이용시간)</p> <p>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p> <p>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 일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p>	<p>통하여 변경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 11 조 수수료</p> <p>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 일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p>	<p>제 9 조(수수료)</p> <p>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p> <p>② 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9 조를 준용한다.</p>	
<p>제 12 조 이체 한도</p> <p>(생략)</p>	<p>제 10 조(이체 한도)</p> <p>(현행과 동일)</p>	
<p>제 5 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p> <p>①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p>	<p>제 11 조(거래의 성립)</p> <p>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p> <p>② (삭제)</p>	
<p>제 13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p> <p>(생략)</p>	<p>제 12 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p> <p>(현행과 동일)</p>	
	<p>(신설)</p> <p>제 13 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p> <p>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p>	

	<p>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p> <p>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1 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p> <p>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제 2 항에 의한 동의를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14 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p> <p>① (생략)</p> <p>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p> <p>2.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신고 하였을 경우</p> <p>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생략)</p> <p>③ 이용자는 제 2 항의 경우에 제 7 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 14 조(거래의 제한)</p> <p>① (현행과 동일)</p> <p>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가 취소되었을 경우</p> <p>2. 접근매체(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p> <p>3. (삭제)</p> <p>②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현행②와 동일)</p> <p>④ 이용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p> <p>1. 제 1 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p>	

	2. 제 2 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거래가 가능한 은행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 6 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④ (삭제)	
	(신설) 제 16 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 (생략)	제 17 조(거래내용의 확인) (현행과 동일)	

<p>제 16 조 오류의 정정</p> <p>① (생략)</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p> <p>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제 18 조(오류의 정정)</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제 17 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p> <p>(생략)</p>	<p>제 19 조(사고·장애시의 처리)</p> <p>(현행과 동일)</p>	
<p>제 18 조 계약내용 변경</p>	<p>(삭제)</p>	
<p>제 23 조 손실부담 및 면책</p> <p>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제 20 조(손해배상 및 면책)</p> <p>① 이용자로부터 제 19 조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 19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2. (생략)</p> <p>3. (생략)</p> <p>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p>	<p>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며, 경과이자의 이율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p> <p>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2. (현행과 동일)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현행 3 과 동일)</p> <p>③ (삭제)</p>	
---	---	--

<p>제 22 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p> <p>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2 조 를 준용한다.</p>	<p>제 21 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p> <p>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p> <p>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p> <p>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p> <p>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p> <p>마.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p> <p>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p> <p>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아.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가.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p> <p>다. 제 18 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p> <p>(신설)</p> <p>제 22 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p>	<p>현행 22조를 21조, 22조로 분리</p>
--	---	-----------------------------

<p>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21 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2 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19 조 신고사항의 변경</p> <p>① (생략)</p> <p>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p>	<p>제 23 조(신고사항의 변경)</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p>	
<p>제 20 조 통지의 방법</p> <p>① 회사는 제 16 조, 제 1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p> <p>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이용자가 제 19 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제 24 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p> <p>① 회사는 제 18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p> <p>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3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 25 조(준수사항)</p> <p>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p>	

	<p>관리방법</p> <p>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p> <p>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p>	
<p>제 21 조 통화내용의 녹음</p> <p>(생략)</p>	<p>제 26 조(거래내용의 녹음)</p> <p>(현행과 동일)</p>	
<p>제 24 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p> <p>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 27 조(비밀보장의무)</p> <p>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 25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p> <p>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p> <p>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 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28 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p> <p>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p>현행 25조를 28조, 29조로 분리</p>

<p>④ 이용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제 29 조(약관의 변경)</p> <p>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제 26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생략)</p>	<p>제 30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현행과 동일)</p>	
<p>제 27 조 분쟁조정 ①~③ (생략)</p>	<p>제 31 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③ (현행과 동일) (신설)</p>	



	④ 이용자는 제 2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8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제 32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